

도시가스사업자

☐

천연가스수출입업자

☐

천연가스반출입업자

지위승계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4일
------	------	---------

신고인	상호	
	대표자	생년월일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

신고내용	사업의 종류	
	허가 번호	
	허가 연월일	
	사업소 소재지	
	지위승계 원인 [] 상속 [] 양수 [] 합병 []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	
	지위승계 연월일	
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(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
시·도지사 귀하
시장·군수·구청장

신고인 제출서류	1.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2.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, 양수·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7, 제1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, 제10조의4, 제10조의12, 제10조의13, 별표 1의2, 별표 1의3, 별표 1의4, 별표 1의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내용	행정처분사유

나.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	도시가스사업법령 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- 1)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- 2) 지위승계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.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7조의2, 제10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처 리 절 차

